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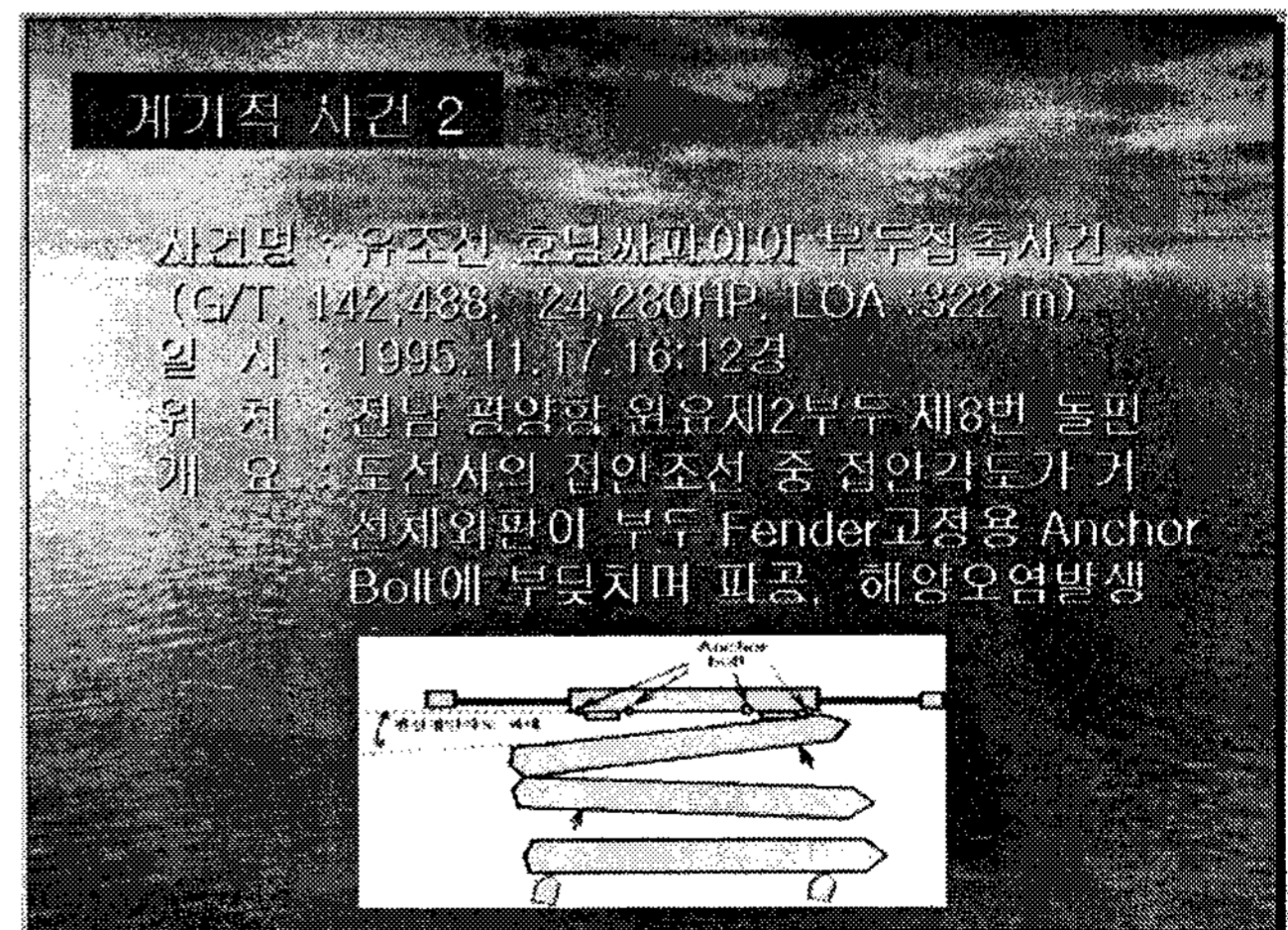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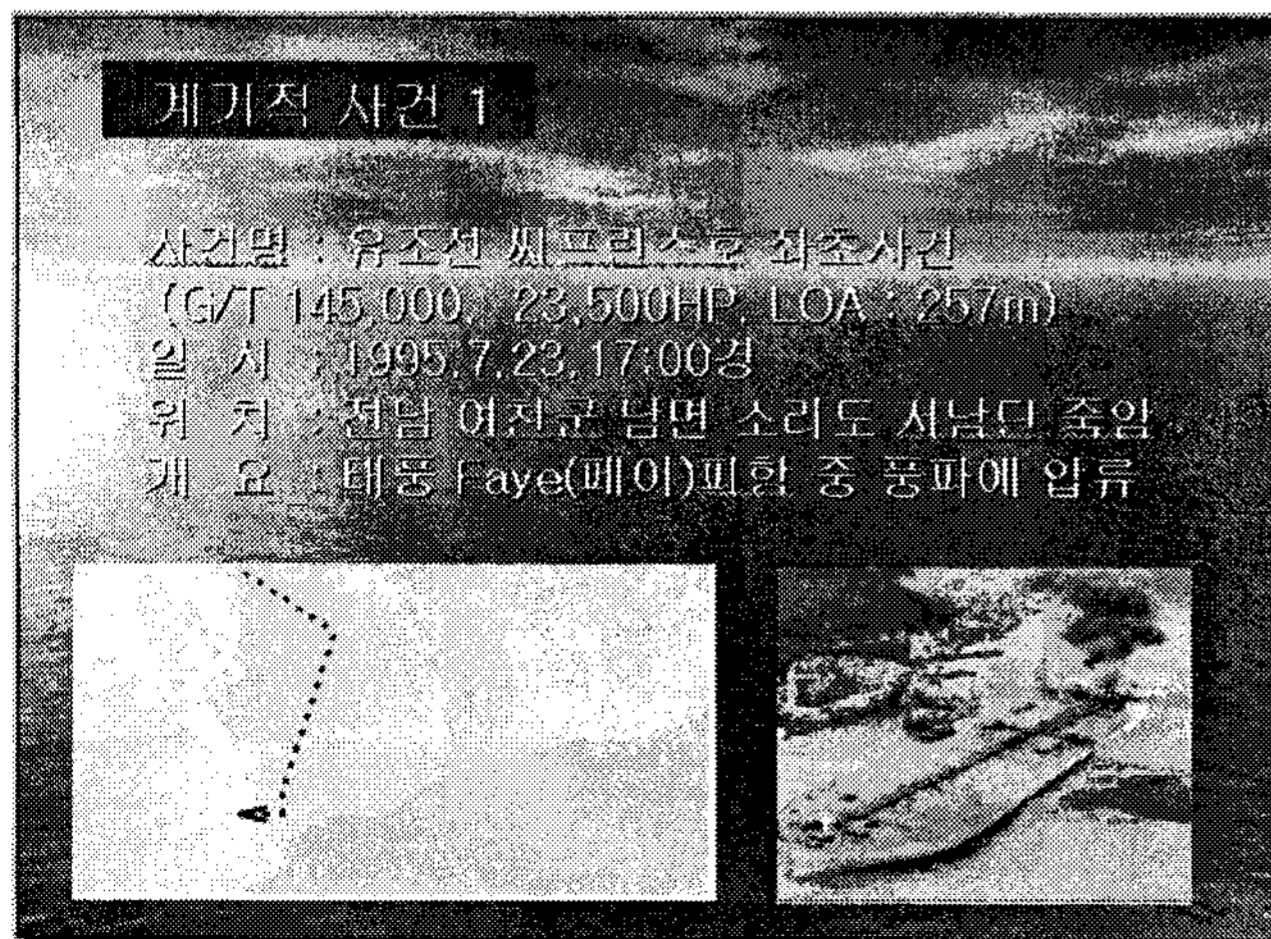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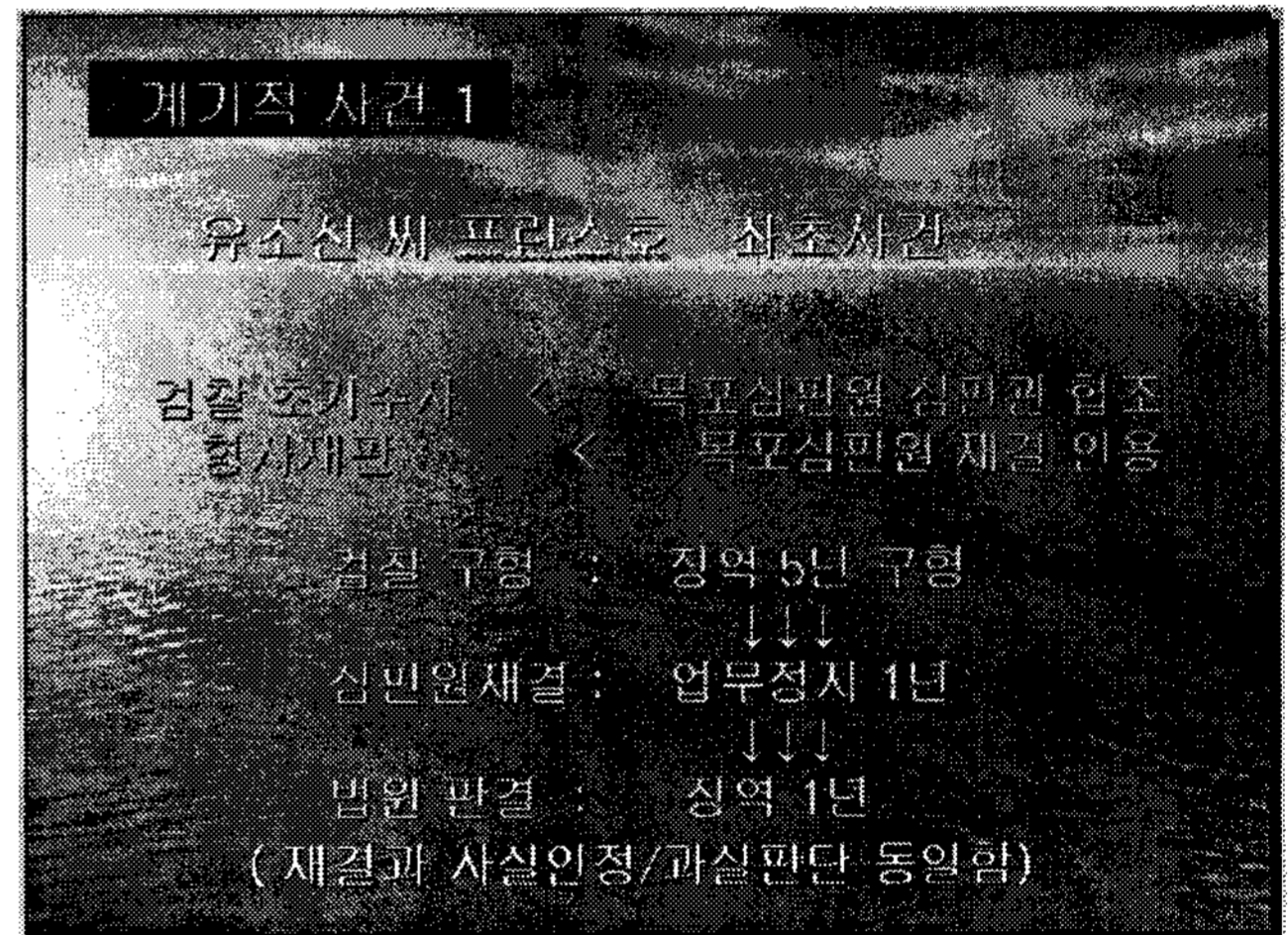
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사법부의 인용 사례

† 허용범*

*부산지방 해양안전심판원장

요 약 :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내용을 몇 가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현재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등이 점차 견고하게 쌓아지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.

핵심용어 : 해사법원, 원인 판단, 과실 판단, 전문위원제도, 원인 비율, 과실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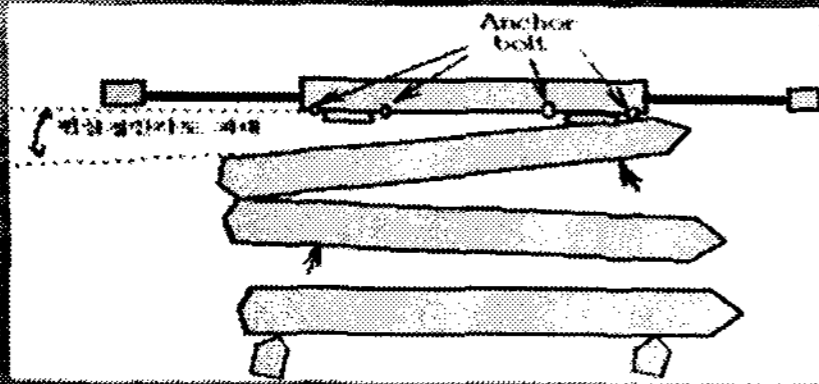


† 교신저자 : 종신회원 plouise@chol.com

계기적 사건 2

유조선 호남씨파이어호 부두접촉사건

검찰 초기수사 < 목포심판원 심판관 협조
 형사재판 < 목포심판원 재결 인용
 재결과 사실인정/과실판단 동일함



두 사건 후 대검 백서 발간시 심판관 감수

기타 재결 인용사례

2. 어선 제성호 일반화물선 케마(Kema) 충돌사건

상호시계내에서 원단상태로 항해중인 양 선박이
 경계소홀로 충돌한 사건에서, 두 선박의 과실비율을
 유조선과 피함선의 원인제공비율인 중앙심판원
 재결과 동일하게 인용

중앙해심의 원인비율 7:3을 과실비율로 인용
 (부산지법 제8민사부 판결 2000가합5036

2003.4.23)

<상세내용보기>

<http://user.chollian.net/~plouise/MABINS/Quot.hwp>

계기적 사건 3

사건명 : 어획물 운반선 아요미호 좌초사건

고의 좌초 여부를 조사한 검찰이 무혐의로
 판단하여 수사종결 후, 심판원 심판전행 중
 고의 혐의발견(재수사개시 및 수사가족송부

↓ ↓ ↓
 산송심리로 보험금 사취를 위한
 고의 짐몰임을 입증/판단

↓ ↓ ↓
 대법원 동일한 판단

현황과 전망

1.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커법원(海事法院) 기능 수행
 ① 원인판단 → 재발방지에 기여
 ② 과실판단 → 책임(과실)비율에 기여
 (신속, 무비용,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대국민
 고급 서비스 제공)

2. 전문위원제도 시행(민사재판)
 ① 지방부의 해난사고에 대한 민사재판시 전문위원
 (영국 Admiralty court의 장노선장 격)출정, 의견
 청취제도를 신설 운영 중.

기타 재결 인용사례

1. 어선 제101대정호 어선 광성호 충돌사건

이로직입후 주기관 정지한 채 전선원 휴식중인
 정류선 제101대정호에 충돌한 항해중인 동력선
 광성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.

동해심의 원인비율 15:85를 과실비율로 인용
 (서울지법 제22민사부 판결 2000가합8859
 2002.12.8)

감사합니다



해양안전심판원